

문서번호	건강관리과-103496
결재일자	2015.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58호

주 무 관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동작구보건소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구나현	이부자	정남숙	모현희	정연찬	08/05 代정연찬
협조	기획예산과장 보건기획과장		代김현호 代김필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안)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6조 (법률 제 13323호, 2015.5.18개정, 2015.11.19시행)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위원회를 통합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방향

- 유사 · 중복 기능의 위원회 단일화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위원회 통합 개요

- 단 체 명 :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통합대상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통합방법 :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보 건 소
건강관리과

사전 검토사항

해당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여부	비고
추진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방침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지역보건법 제 6조 4항)	
사업추진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기존사업 <input type="checkbox"/> 일회성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년)	
예산확보사항	<input type="checkbox"/> 신규 확보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보 완료 (국 , 시 , 구 1,520천원) <input type="checkbox"/> 비예산 사업	예산탐조 ()
이해관계인유무	○ 주민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위원) 무 <input type="checkbox"/> ○ 단체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무 <input type="checkbox"/>	
타자원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울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업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보필요성	○ 홍보대상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보도자료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보물심사 협 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안)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의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회원이 존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6조 (법률 제 13323호, 2015.5.18개정, 2015.11.19시행)

➔ 2015. 5. 18 위원회 운영관련 회신 공문 [건강정책과-3820(2015.05.18)호]

-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 위원회 통합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
 -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하였으며,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 가능

II 추진배경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 기능유사 및 중복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구민건강증진 계획이 포함됨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실효성 미약 :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미약

III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 현황

- 일반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설치근거 및 주요내용	위원수	2015년 예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부구청장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 - 내용 : 구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명	960천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부구청장	- 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 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10명	560천원

○ 위원회 구성

구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 (현 10명)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현 11명)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중 호선 (현 부구청장)
위원 자격	- 동작구의회 의원 1명 이상 - 지역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 동작구 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 보건의료관련전문가 - 동작구 공무원

○ 위원회 명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직위	이름	직업(경력)	직위	이름	직업(경력)
위원장	정연찬	부구청장	위원장	정연찬	부구청장
위원	모현희	보건소장	위원	모현희	보건소장
위원	강한옥	구의원	위원	이봉준	구의원
위원	권혜진	중앙대학교 간호대학교수	위원	권혜진	중앙대학교 간호대학교수
위원	김향희	동작구 치과의사회 부회장	위원	유동기	동작구 치과의사회 회장
위원	임호성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위원	한동원	동작구 한의사회 부회장
위원	박정순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 총무	위원	박옥균	동작구 약사회 부회장
위원	변재영	변재영 신경정신과 원장	위원	장남수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위원	오영이	동작구의사회 사무국장	위원	유혜숙	중앙대학교병원 영양팀장
위원	홍연표	중앙대 의과대학	위원	안승준	의사(동작경희병원장)
위원	-	-	위원	이준영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위원회 기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제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중복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에 관하여 심의·조정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가 미약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실효성이 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
- 단일 위원회에서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토의·심의함으로써 위원회 실효성 및 행정의 효율성 증가

☐ 타자치구 조례개정사례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 및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로 통합
 - 구로구(1997년), 노원구(1999년), 종로구(2009년), 은평구(2010년)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연 2회 개최 → 필요시 개최
 - 서초구, 금천구(2011년), 중구(2013년)

IV

개선방안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 추진

-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 단일화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V

추진계획

① 구성 및 운영

- ☐ 위원회명 :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 통합대상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 통합방법 :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② 조 례 정 비

☐ 대 상

폐 지	개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 **정비목적** :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정비시기** : 2015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정에 따름
- ☐ **정비방법** : 조례폐지 및 통합

VI

행정사항

- ☐ 2015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 기획예산과
- ☐ 두 위원회 위원 대상 사전안내 ----- 건강관리과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통합 추진 보건기획과
끝.